

일본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 폐지가 주는 시사*

- 3월말 폐지된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, 동법에 의해 경영이 개선된 사례는 적고, 부실채권에비균을 양산했다는 평가
- 향후 기업재생에 역점을 둔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하여 ▷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안정에 의한 심사능력 향상과 정부에 의한 자금지원 대상 선별, ▷금융기관의 감정평가 전문 인력 육성, ▷성패 사례 분석을 통한 경영재건가능성 여부 판별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

* 본 내용은 오가와 카즈오(小川一夫) 오사카대학 교수가 2013년 3월 19일자 「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 :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 종료」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3월말 폐지된 일본의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은 세계금융위기로 악화된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9년 12월 시행, 이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두 차례 연장

1. 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

□ 법 제정 배경

- 원활화법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채무 상환과 관련된 부담경감 신청이 있는 경우, 당해 기업의 사업 개선 또는 재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요청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음
-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조달 수단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데,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상환

할 수 없게 되어 차입이 어려워지는 경우, 사업의 존속이 위태롭다는 의견이 법제정 취지임

□ 의의와 문제점

-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은 과거 경기침체 시에도 있었음
 - 1988년에는 일본정부가 금융위기 대응대책으로 총 30조엔의 신용보증기금을 창설
 - 2008년 리먼 쇼크 직후에도 긴급보증제도가 신설되어, 신용보증협회가 용자대상기업의 도산위험을 100% 보증
- 금융위기와 같은 예기치 않은 큰 외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, 수익이 크게 감소, 채무 상환이나 이자지급이 어렵게 된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
- 그러나 기업재생 전망이 어두운 기업이 보증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역 선택(adverse selection)의 문제나 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은행 감시(monitoring)받지 않는데 편승하여 경영노력을 태만히 하는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문제가 지적됨
- 원활화법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점에 집약됨
 - 금융기관에 대출조건 완화를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는 이미 기업재생을 포기한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음
 - 원활화법에 의해,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이 연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게 됨

- 당초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의해 경영이 개선된 사례는 적고, 부실채권예비금을 양산했다는 평가도 있음

2. 연장 및 종료에 따른 대책

□ 원활화법 연장 대책

- 일본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원활화법 연장 대책을 강구
 -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금융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
 - 경영상담·지도나 사업재생 등 컨설팅 기능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재건에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출구전략도 제시

□ 원활화법 종료 대책

- 3월말 원활화법 종료를 앞두고, 일본 금융청은 검사기준을 완화 하면서, 원활화법 폐지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서서히 출구를 단는 연착륙노선을 선택
 - 재생펀드로 경영상태가 나쁜 중소기업을 매수, 기업재생을 꾀하려는 움직임도 보임
 - 기업재건의 창구인 기업재생지원기구를 개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를 준비
 - 중소기업의 재생지원을 위한 출자·융자한도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있음
- 그러나 아무리 자금적인 지원이 충실하더라도 사업재생 전문 인

력이 없으면 재생이 실현되기 어려움

- 도쿄상공리서치 조사에 의하면, 원활화법 종료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50,000~60,000개사 정도로 추정
-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재생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재생을 담당하는 현존 인력으로는 역부족

3. 금융기관들의 대응과 시사점

1) 지역금융기관들의 대응

- 일본 도호쿠(東北)지역 6개현의 지역금융기관 52개 은행을 대상으로,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시기를 포함한 2010.3~2012.3 기간 중, 대출조건 변경신청에 대한 지역금융기관들의 대응을 실증분석 결과
 - 법 성격상, 대출조건 변경신청에 금융기관이 변경에 응한 비율은 매우 높으나, 지진 이후에는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신청에 대한 수락율이 떨어지고 있음
 - 변경신청을 수락함으로써 채무상환 연기나 이자지급 지연이 발생, 금융기관의 수익이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지진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은 이를 우려하여 신청 수락을 주저했던 것으로 조사
 - 게다가 수락율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공적자금 투입을 신청하기 쉽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신청을 많이 수락한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반영
 - 원활화법의 실시와 병행하여 금융검사매뉴얼도 개정,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이 인정된 경우에도 부실채권으로 구분하지 않는 요건도 종래보다 확충됨

-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악화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출조건 변경으로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발생한 것은 사실임
- 이와 같이 대출조건 변경신청에 대하여, 재정상태가 양호한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사실이나, 원활화법의 최종목표인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음
- 따라서,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처의 경영과제를 정확히 파악·분석하여 경영재건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
 -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기술도 다른 것이 특징. 지역금융기관은 자금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고객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, 이를 분석하는 노하우도 갖춰져 있음
 - 그러나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, 각 기업들이 기술적인 특성을 살려 상세한 경영계획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
2) 시사점

□ 재생을 고려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

-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기본원칙을 살려 다음 2가지 유형의 과오를 최소화하는 심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 - 제 1유형의 과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차입 수요자에게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비효율성임
 - 제 2유형의 과오는 비생산적인 프로젝트밖에 없는, 대출해서는 안

될 차입수요자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비효율성임

- 실증분석결과, 재무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현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알 수 있음
 - 제 1유형의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재정안정을 위해 심사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
 - 제 2유형의 과오는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부족과 차입수요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인 경우가 많음
 - 차입수요자가 경영부진으로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, 신용보증협회가 대위변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적당주의식으로 행동하게 되면, 심사나 모니터링에 적극 자원을 투입하지 않거나, 차입수요자도 상환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
 - 따라서 제 2유형의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,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, 정부에 의한 자금지원을 긴급피난적인 것에 한정하여, 대출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관여(commitment)를 가급적 자제해야 함

□ 감정평가 전문 인력 육성

-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 평가와 함께 장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감정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
 - 대학과 기업에서 기술부문에 근무했던 전문 인력의 고용, 대학의 기술이전기관(TLO) 및 고등전문학교와 제휴하여 거래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고, 재무 분석과 함께 종합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체제를 구축해야 함
 - 지역금융기관을 거래기업 네트워크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게 되

면, 구입처·판매처 및 사업제휴처의 소개 등과 같은 서비스도 확보할 수 있어 경영재건 효과도 높일 수 있음

- 성패 사례분석을 통한 경영재건 가능성 여부 판별
 - 원활화법에서 사업재생에 성공한 사례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나 역 선택으로 실패한 사례를 정리하여 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
 -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재건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준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황 시에 공적자금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됨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3.3.19)